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항 공 안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감경·가중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근거 신설(안 제6조)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가중기준 보완(안 별표 3)

감경·가중 시 적용하는 부과액의 상한 범위를 확대(과징금의 1/2 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신설

다. 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조정(안 별표 3)

위반사항과 과징금 규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고,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체감하여 항공 안전법령의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항공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운항·정비규정을 인가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하향하여 처분토록 하고, 위반사실 미인지 등으로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병합(併合)하여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00%범위 내에서 가중하도록 함

마. 항공사업 종류별 과징금 금액 조정(안 별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액 조정에 맞춰 국내항공·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도 일괄 조정하되,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액의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10%, 항공기사용사업자는 3% 내외로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분할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일행위로 인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3분의 2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1회 위반행위로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별로 합산하여 처분한다.
- 다. 나목의 같은 위반행위란 제3호(개별기준)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허목 2)·3), 보목 2)·3), 오목 2)·3) 및 호목 2)·3)의 위반행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 라. 제3호의 소목부터 조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 마. 제3호의 무목1)부터 1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바. 제3호의 무목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사.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아. 제3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전년도(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가중 및 감경기준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3분의 2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안전을 위해 부득이 하게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 경우
 - 2) 위반행위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에 의한 개선성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최근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안전도 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았거나, SMS 등 사고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항공수요의 변화,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항공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5) 항공사업자의 관리·감독 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위반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6)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로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
- 7) 「공항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항시설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이착륙 공항의 특성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위반행위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타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한 경우
- 9) 그 밖에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3분의 2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행위 후 재발방지 및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3) 타 항공기의 운항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 4) 위반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조작·변조한(하려고 한) 경우
- 5) 소속 종사자의 위반을 방조하거나 강요한 경우
- 6) 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사실조사관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 7)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 8)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개선(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9) 이착륙 공항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운항승무원 등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 위반을 한 상태로 항공기 등을 7일 이상 운영한 경우
- 1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고,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 그 밖에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300	60	30	9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1,200	240	120	33
다.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900	180	90	25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않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5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900	180	90	25
마.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6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900	180	90	25
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7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900	180	90	25
사.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않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8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900	180	90	25

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9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400	80	40	11
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않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900	180	90	25
차.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1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400	80	40	11
카.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2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400	80	40	11
타.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3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300	60	30	8
파.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않고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4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400	80	40	11
하.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	법 제91조 제1항 제15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180	36	18	5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거.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 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 하게 하거나 계기비행 · 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 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6 호 및 제95 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너.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 하여 소속 승무원의 피로 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7 호 및 제95 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더.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 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 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 우	법 제91조 제1항 제18 호 및 제95 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러.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 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 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 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 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 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19 호 및 제95 조 제1항 · 제2항	400	80	40	11
머.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0 호 및 제95 조 제1항 · 제2항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 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400	80	40	11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400	80	40	11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00	80	40	11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00	80	40	11
버. 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1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1) 항공기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400	80	40	11
2) 항공기준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60	30	8
3)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60	12	6	2
서.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2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어. 법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	법 제91조 제1항 제23	300	60	30	

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호				
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4호	300	60	30	
처.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5호	180	36	18	
커.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6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400	80	40	11
터.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7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400	80	40	11
퍼.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8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600	120	60	17
허.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29호 및 제95조 제1항·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		1,200	240	120	33

하여 취급한 경우					
나) 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1) 외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00	80	40	11	
3) 1) 및 2) 외의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6	4	1	
고.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	법 제91조	400	80	40	11

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제1항 제30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노.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1호	1,200	240	120	
도. 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2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로.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3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400	80	40	11
모. 법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4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400	80	40	11
보.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5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00	240	120	33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비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비행을 운항한 경우					
2) 1) 외에 비행규칙 등 중		400	80	40	11

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1) 및 2) 외에 기록물의 보관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6	4	1	
소. 법 제90조제1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1,200	240	120	33	
오.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00	240	120	33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항공로·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장비품 등의 사용한 계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1) 외에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00	80	40	11	
3) 1) 및 2) 외에 지상 제	180	36	18	5	

빙(除氷)·방빙(防水) 또는 신뢰성관리프로그램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 법 제90조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38호 및 제95조제1항	400	80	40	11	
초. 법 제93조제1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0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1,200	240	120	33	
코. 법 제93조제2항 단서(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0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400	80	40	11	
토. 법 제93조제2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1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400	80	40	11	
포. 법 제93조제5항 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법 제91조 제1항 제42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10	6	4	1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호. 법 제93조제5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및 제95조 제1항 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00	240	120	33
가)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PBN)의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라) 정밀계기접근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경우				
마)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1) 외에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00	80	40	11
3) 1) 및 2) 외에 보고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6	4	1

구. 법 제94조 각 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4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600	120	60	17
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5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두.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 · 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6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루.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7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300	60	30	8
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 ·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8호 및 제95조 제1항 · 제2항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10,000	2,0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9,000 이상 10,000	1,800 이상 2,000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미만 7,200 이상 9,000 미만	미만 1,440 이상 1,800 미만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5,400 이상 7,200 미만	1,080 이상 1,440 미만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540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3,600 이상 5,400 미만	720 이상 1,080 미만	360 이상 540 미만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1,800 이상 3,600 미만	360 이상 720 미만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30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80 이상 36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			90 이상 180 미만	75 이상 150 미만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90	50
1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60 이상 90 미만	20 이상 50 미만
1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30	10

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이상 60 미만	이상 20 미만
1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중상자가 10명 미만 인 경우			15 이상 30 미만	7 이상 10 미만
1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 상인 경우	1,800	360	180	50
1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00 이상 1,800 미만	240 이상 360 미만	120 이상 180 미만	33 이상 50 미만
1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900 이상 1,200 미만	180 이상 24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25 이상 33 미만
18)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목부터 더목까지에 해당 하지 않는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이하 더목 및 버 목에서 같다)가 비행횟 수 3만회 이내에 5회 이 상인 경우	1,800			
19)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4회인 경우	1,200			
20)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3회인 경우	9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② (생략) <신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해야하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 <u>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 2. <u>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u> 3. <u>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u>

<신 설>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분할된 과징금

	<u>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u> <u>아니한 경우</u>
	2. <u>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u> <u>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u> <u>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u> <u>우 등 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u> <u>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u> <u>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u>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u> <u>해소되어 납부의무자가 과징</u> <u>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u> <u>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u> <u>하는 경우</u>
③ (생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략)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5